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18
------------	------

발의연월일 : 2017. 9. 1.

발의자 : 설훈 · 소병훈 · 위성곤
박홍근 · 유은혜 · 안민석
권칠승 · 조승래 · 신동근
이원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항 신설 및 제9항).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수립·시행”을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u><신 설></u>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 ⑥ (생 략)	⑦ ·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